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익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747 발의연월일: 2021. 7. 26.

발 의 자:홍익표·김민기·문진석

송재호 • 윤영찬 • 이원욱

이형석 · 조승래 · 한준호

홍성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형연구시설은 기초과학연구 및 신소재, 의약품 개발 등 미래유망분야 원천기술 확보의 핵심요소이자 고용유발, 관련 산업 육성 및 신산업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으로써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있음.

그러나, 기술적 복잡성, 관리의 어려움, 대규모 예산 투입 등의 이유로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 국내 대형연구시설 구축 사업에서 예산증액, 기간연장 등 계획변경이 빈번함.

이에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 전주기에 대하여 표준 추진절차를 확립하고 단계별 주요내용·추진방법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 기획·관리가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형연구시설 구축 관련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.

기존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

지침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'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·운영·공동활용 및 처분'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'구축' 범위 추가를 통해 대형연구시설 구축과 관련한 규정의 제정 근거 및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(안 제28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3항 중 "관리·운영·공동활용"을 "구축, 관리·운영·공동활용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확	제28조(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확
충·고도화 및 관리·활용) ①	충·고도화 및 관리·활용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	③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	
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	
시설·장비의 <u>관리·운영·공동활</u>	<u>구축</u> , 관리·운영
<u>용</u>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	<u>· 공동활용</u>
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